

소비량 적은 소규모 사용농약의 개발방안

등록비용만큼 시장성 없는 것이 문제
공동연구, 제도보완 등 정책적 배려있어야

조사홍보부

작물을 재배하면서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 농약사용이 불가결한데도 재배면적이 작은 소규모 재배작물의 경우 적용농약이 개발 보급되지 않아 병해에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다. 이런 작물들을 minor crop, 이런 작물에 사용되는 농약을 minor use pesticide라고 하는데 각각 소규모 재배작물, 소규모 사용농약으로 부르기로 하고 최근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註>

최근 미국에서는 소규모작물재배자연협회(Minor Crop Farmer Alliance)가 제출한 법률안이 소규모재배작물에 대한 적용농약의 등록을 촉진하고 있다.

소규모 사용농약은 등록비와 재등록비의 부담 때문에 농약제조업체에서는 별다른 매력이 없었다.

주된 이유는 재등록시 제출해야하는 잔류자료를 작성하는데 10만불 이상, 완벽한 자료를 만드는 데는 수백만달러가 들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소규모 사용농약의 전체 시장규모는 라벨승인을 받기 위한 자료작성 비용의 일부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작다.

재배작물이 다양화되면서 재배자들은 소규모 사용농약을 계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이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미국환경보호청(EPA), 농약업계, 미농무성(USDA)의 계속되는 관심사이기도 하다. IR-4(지역간 협력연구)는 인원이 부족하고 돈이 없어 하지 못했던 소규모 재배작물 농약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고 있다. 재정의 부족 문제는 2년전 소규모재배작물의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기금들을 통합 운영하면서 해결되기 시작했고 EPA의 제3자 등록계획은 농약등록권 승인과 책임의 부과를 통해 재배자연합이 특정작

물에 특정농약의 제한된 사용에 대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991년 MCFA(소규모작물재배자연협회)는 소규모재배작물에 대한 농약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100여개 소규모작물재배자단체의 연합회인 MCFA는 소규모사용농약의 등록확대를 위한 법률안 도입의 최일선에 선 단체이다. 그들의 첫번째 법안인 HR967은 소규모 사용농약 등록시 제출된 자료는 1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최근 수정된 제안인 HR1352는 올 5월중 상원에 통과될 예정인데 몇가지 주요한 사항이 있다. HR1352는 등록권자에게 10년간 자료의 사용에 더해서 소규모작물 3개를 등록할 때마다 자료사용 기한을 1년씩 연장하여 최고 3년간 추가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등록권자가 9개 소규모 재배작물을 등록할 경우 최고 13년간 자료의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사용농약의 등록자는 자료제출에 대한 특혜를 받게 될뿐만 아니라 재등록시 자료작성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감면받는 셈이 된다. 비싼 등록비와 작은 시장규모 때문에 매력이 없는 소규모 사용농약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현 상황으로는 이 법안의 통과가 낙관되고 있다. 미국의 상황을 한국에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재배작물의 다양화, 가정원예용 농약사용의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소규모사용농약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의 면제 등을 통해 농약업계가 소규모사용농약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제도보완 차원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농약정보**